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일자	2003. 3. .
제안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코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 감사청구인 수를 너무 높게 정할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청구자의 불편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 너무 낮게 정할 경우에는 주민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의 남발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므로 인구수를 감안하여 청구인 수를 적정하게 상향조정

2. 수정 주요골자

-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상향 조정

3.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중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수는 **200명이상**으로 한다”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수는 **300명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함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 한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 조(목적)----- ----- -----, -----,	제1조(목적)-----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u>150분의 1</u>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200명</u> 이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300명</u> 이 -----,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행규칙)----- -----,	제3조(시행규칙)-----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부 칙 -----,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자치단체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 8. 31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한 연장협의(2003. 2. 28 → 2003. 8.31).
-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02. 10. 1일자로 권한 위임된 사무중 일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에 따른 추가인력 보강

□ 주 요 내 용

- 기한연장 : 2003. 2. 28 ⇒ 2003. 8. 31(6개월)
- 직렬·직급별 초과현원 66명 ⇒ 43명
 - 부칙 제3조 2항 개정(제497호)
- 정원조정 (+1) : 1,331명 → 1,33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09명 → 1,310명

□ 참 고 사 항

- 도 행정 12200-10258(2003. 2. 14)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통보
- 도 행정 12200-10317(2003. 2. 27)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재위임에 따른 인력 추가 보강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1,331”을 “1,332”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1,309”를 “1,310”으로 한다

조례 제497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497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은 2003. 3. 1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331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09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u>1,332</u> ----- ----- 1 ----- : <u>1,310</u> - 2 (현행 제2호와 같음)
조례제497호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행 제1항과 같음) ② -----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 -----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관계법령 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추징규정 등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부(경상북도) 시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 임.

2. 주 요 골 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을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제3조)
- 나. 노인복지시설 대한 감면대상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자를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로 확대함(안 제6조)
- 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과세표준액의 50%에서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9조)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안 제12조)
-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안 제16조)
- 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 사.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5.12.31까지 연장함(안 제25조)

3. 참 고 사 항

- 가. 노인복지법
-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마. 도 세정 13400-13066 (2002. 12. 7)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등에 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 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 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 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 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된 날 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u>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u> <u>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u> <u>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u> <u>추징한다.</u> 1. ~ 4. (생략) 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u><단서 삭제></u>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 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u>노인복지시설</u> ----- ----- <u>노인복지시설</u> ----- ----- ----- -----.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u>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u>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u>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u> 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 ----- ----- <u>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u>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② <u>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u> 1. ~ 2. (생략)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u> ----- ----- -----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u>2002년 12월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 2. (생략)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u>2005년</u> <u>12월31일</u>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